#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67

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 : 안상훈 • 권영세 • 고동진

이성권 · 김소희 · 박성훈

서일준 • 최보윤 • 박성민

백종헌 · 김성원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공유방,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가 중요함.

이를 위해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시술 초기정보와 환자의 부작용 정보 등 의료 실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상사례 실 마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제품개선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 는 환류체계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장기적으로 의료 실사용 정보 추적이 필요한 장기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정하고 정보의 수집, 분석,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고자 함(안 제2 9조제2항 및 제30조).

####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"을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장기추적조사대상"으로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(이하 "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"라 한다)를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3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및 자료 외에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시술 및 이상사례 정보 등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ㆍ평가할 수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·분석·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)	제29조(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
	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 삽
	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
	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
	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
	기(이하 "장기추적조사대상 의
	료기기"라 한다)를 별도로 정하
	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적
의료기기의 지정기준・관리기	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장기추적
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	조사대상
총리령으로 정한다.	
제30조(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)	제30조(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
	조제2항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
	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로부터 제
	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및
	자료 외에 장기추적조사대상 의
	료기기의 시술 및 이상사례 정
	보 등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
	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

	제출받아 이를 분석 • 평가할 수
	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⑤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
	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
	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
	<u>령으로 정한다.</u>